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6.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고명욱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3.(수) ~ 9. 12.(금)

2. 제정이유

- 가정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지원사업 및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실태조사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감내해야할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가정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것으로,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가정에서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 및 가사 스트레스의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확산,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에서 규정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등 가사의 중요성 및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부합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가사 부담 실태1 > (2024년 사회조사: 통계청)

(단위: %)

		계	가사 부담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남편	2022년	100.0	74.6	18.2	56.4	21.3	4.1	3.3	0.8
	2024년	100.0	71.5	17.8	53.7	24.4	4.2	3.2	0.9
아내	2022년	100.0	76.1	23.7	52.4	20.5	3.4	2.9	0.5
	2024년	100.0	73.4	22.2	51.2	23.3	3.3	2.7	0.6

주: 1) 19세 이상 부부(주말부부 포함)

☞ 통계표 (54쪽) 참조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